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문화유산의 가치를 인정받고, 안전조치가 된 총포 등은
허가 없이 소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진중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374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진중오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3. 26.
3. 회 부 일 : 2025. 3.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포·도검·화약류·석궁 등의 제조·판매·임대·소지·사용과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험과 재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음.

최근 사격, 양궁과 같은 스포츠 종목은 올림픽 등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준수한 성적으로 세계적인 위상을 떨치는 종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러한 빛나는 스포츠 기록과 영광을 기념하기 위하여 해당 종목에서 걸출한 성적을 낸 선수들의 총기나 활 등을 스포츠 유산으로 전시하여 해당 종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제고하고 관광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스포츠 유산을 전시하는 서울올림픽기념관에서는 현행법의 규정을 들어 사격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낸 선수의 경기용 총기의 전시를 거부하고 있어 문화유산에 준하는 가치를

가치는 스포츠 유산에 해당하는 총포·도검·화약류·석굴에 대하여 적절한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유산관리기관이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거나 이에 준하여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총포·도검·화약류·석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스포츠 유산의 전승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유산관리기관이 문화유산 등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안전 조치를 한 총포·도검·화약류·석궁에 대해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같은 법 제10조 및 제12조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소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의 배제) ① 제2조제3항 제3호아목 및 자목의 장난감용 꽃불류와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에 대해서는 제6조, 제6조의3,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제32조 및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장난감용 꽃불류와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에 관하여 제4조, 제9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허가를 받는 자의 경우에는 제6조, 제6조의3,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8조, 제21조 및 제2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③ 군수용으로 제조·판매·수출·수입 또는 관리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의 배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u><신 설></u>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유산관리기관이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거나 이에 준하여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총포·도검·화약류·석궁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¹⁾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²⁾ 없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0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정하고 있음.

법률 적용의 예외 사유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³⁾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소지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직무상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2.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3.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화약류를 제조한 자가 자신이 제조한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4. ~ 9. (생 략)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①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총포(제2호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2. 총포 중 엽총·가스발사총·공기총·마취총·도살총·산업용총·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3.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② ~ ⑤ (생 략)

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총포·도검·화약류를 문화유산보호관리기관이 발행한 증표를 가지고 소지하는 사람을 정하고 있음.

경찰청에 따르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가 적용된 사례는 현재까지 없음.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지 않은 원인에는 문화유산보호관리기관이라는 개념은 현행 법령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지만 해당 기관의 의미에 대해 동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 등이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문화유산 가치를 인정하는 주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유산관리기관’으로 구체화하고, 인정 방식도 ‘발행한 증표’에서 ‘인정하는 경우’로 확대함으로써, 서울올림픽기념관 등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고, 문화유산의 가치를 가지는 총포 등을 소지·전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제12조(허가없이 총포등을 소지할 수 있는 사람) ① 법 제10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없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을 소지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총포·도검·화약류를 문화유산보호관리기관이 발행한 증표를 가지고 소지하는 사람
 2. ~ 7. (생략)
- 4)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따르면,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기재된 서울올림픽기념관이 선수용 총기를 소장·전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관을 운영하는 국립체육진흥공단과 관계기관의 2021년 논의에서는 서울올림픽기념관은 문화유산보호관리기관이 발행한 증표를 소지하지 않았으므로 총포를 소지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검토되었음.

다만, 개정안의 취지가 법률 제10조의 규정을 배제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법 체계상 개정안 제3조제5항을 신설하여 이 법 전체의 적용을 배제하기보다는 현행 법률 제10조에 호를 신설하여 법 제10조의 적용 제외 사유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⁵⁾

한편, 개정안은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와 주요 내용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가 실제 적용·집행될 수 있도록 문화유산관리기관이 어떤 기관을 의미하는지(예: 국가유산청, 국립 박물관 등)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경찰청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총포류 등을 소지하려는 경우 허가관청에 소지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법 제 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

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소지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직무상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2.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3.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화약류를 제조한 자가 자신이 제조한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4. 판매업자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5. 총포 판매업자가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판매하는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소지하는 경우
- 5의2. 임대업자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6.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를 소지하는 경우
7. 제18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8. 제21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의 양수허가를 받은 자(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양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9.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종업원이 그 직무상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라 문화유산 등 보존 가치가 인정되는 총포 등은 예외적으로 허가 없이 소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행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도 입법 목적과 취지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그리고, 국립스포츠박물관⁶⁾에 대한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중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370)⁷⁾이 개정안과 동일한 날인 2025년 3월 26일에 발의되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25년 국가유산청, 경찰청과 논의를 통해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관리기관은 국립 박물관으로 해석된다는 점을 전제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설립근거가 마련되는 경우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총포류에 대한 향후 수증 방안 계획을 준비 중임.

6) 서울올림픽기념관은 리모델링공사를 위하여 2018년 7월 1일부터 2026년(예정)까지 휴관 중임. 2016년부터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서울올림픽기념관과 연계하여 국립스포츠박물관의 건립을 추진 중임.

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중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370) 제13조의3

현행	개정안
<신설>	제13조의3(국립스포츠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스포츠 유산의 수집·보존·전시와 이의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국립스포츠박물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 의 처
02) 6788-5345